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Brief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23년 제5호(통권 제38호)

발행일 2023년 8월 30일 | 발행인 허재준 | 편집인 장인성 | 편집교정 정철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 TEL 044-287-6083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의 고용효과 : 외식업을 중심으로*

전승훈**

I. 서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으로 보면 2015~2020년 기간 중 가맹본부의 수는 3,910개에서 5,602개로, 브랜드는 4,844개에서 7,094개로, 그리고 가맹점 수는 208,104개에서 258,880개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가맹점의 매출규모는 74.6조 원, 가맹점 종사자 수는 84.7천 명으로 우리 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라는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 상호협력체계의 구축과 신뢰·소통이 성과 달성의 전제가 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2008~2020년 기간 중 총 7,480건의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이 접수될 정도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 간의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종료, 부당한 계약 해지,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 다양하다. 이에 고수현(2019), 서봉석(2019),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주)하이데이터(2020), 양동희·박승남(2021) 등 관련 연구는 공정성이 담보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신뢰 및 상생협력관계를 토대로 양자가 모두 상생하는 가맹사업 구조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

* 이 글은 전승훈 외(2022),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의 고용효과: 외식업을 중심으로」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승훈 외(2022)을 참고하기 바람.

**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업자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및 불공정거래의 실태, 원인, 문제점과 분쟁 처리의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공정경제는 가맹사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가맹사업 분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가맹사업의 공정경제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상호 간의 신뢰에 영향을 미쳐 사업 운영이 효율성이 높아져 매출이 증가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매출 증가 혹은 비용감소가 고용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재준 외(2018)는 가맹거래 항목 중 비용 항목의 합리성과 가맹본부에 대한 분배적 공정성 지각 수준이 떨어질수록 고용의 양이 줄어들며, 가맹점주가 지각하는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이 부분적으로 고용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허재준 외(2018)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는 가맹사업 공정경제에 대해 분석하면서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가맹본부의 74%, 브랜드의 76%가 집중되어 있는 외식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경제 제도가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¹⁾ 이때 가맹사업의 공정경제 제도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 간의 분쟁실태 및 전송훈 외(2022)에서 실시한 가맹사업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단계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개선될 경우 이루어지는 공정성의 개선 효과(계약단계 공정성 개선의 효과)와 고정 로열티 제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의 성과가 가맹본부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물류 마진 및 설비/인테리어 마진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유인과 관행이 개선될 경우 나타나는 효과(운영단계 공정성 개선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제시된 정부정책방향이 가맹사업 공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가맹사업 공정경제가 매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장에 이어 제II장에서는 외식업을 중심으로 가맹사업 현황을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가맹사업 분쟁실태 및 가맹사업 내 공정성에 대한 가맹사업주

의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시나리오별로 가맹사업 공정성의 개선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매출 증대가 가맹사업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가맹사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II. 가맹사업 현황 분석

1. 가맹사업 현황

통계청의 「프랜차이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식 가맹사업²⁾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가맹점 사업체 수는 139,816개로, 2016~2020년 기간 사업체 수는 연평균 5.5% 증가하였다. 가맹사업의 총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20년 기준 각각 32조 6,540억 원과 2조 8,350억 원이고 2016~2020년 기간 연평균증가율은 각각 8.4%와 3.7%이다. 2020년 기준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 3,400만 원,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약 2,000만 원이다. 외식 가맹업의 종사자 수는 2016~2020년 연평균 2.1% 증가하여 2020년 기준 451,295명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2020년 기준 약 3.2명이고, 종사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약 1,1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20년의 경우 전년보다 사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영업이익, 종사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코로나19가 가맹사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림 1]은 통계청의 「프랜차이즈 조사」 2019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외식가맹사업체 1개소당 근로형태별 종사자 수이다. 2019년 기준 사업체당 종사자 3.8명 중 상용근로자는 1명, 자영업자 1명이고, 임시일용근로자가 1.5명, 무급가족종사자가 0.4명이다. 참고로 2020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비중은 63.7%이다.³⁾

1) 이하에서 가맹사업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외식 가맹사업을 의미한다.

2) 본 연구에서 가맹사업은 모두 외식가맹사업을 의미한다.

3) 소수점 한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를 단순 합계하면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3.9명으로 본문에 제시한 3.8명과 차이가 난다. 이는 반올림한 결과를 합계하면서 생긴 오차 때문이다.

〈표 1〉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명, 십억 원, 백만 원)

|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연평균증가율 |
|-------------|---------|---------|---------|---------|---------|--------|
| 사업체 수 | 139,816 | 125,634 | 123,178 | 116,965 | 112,827 | 5.5 |
| 매출액 | 32,654 | 32,848 | 29,925 | 26,044 | 23,659 | 8.4 |
| 영업이익 | 2,835 | 4,146 | 3,205 | 2,656 | 2,447 | 3.7 |
| 종사자 수 | 451,295 | 482,865 | 477,315 | 433,729 | 414,924 | 2.1 |
| 인건비 총액 | 4,972 | 5,335 | 4,619 | 3,855 | 3,331 | 10.5 |
| 사업체당 매출액 | 234 | 261 | 243 | 223 | 210 | 2.7 |
| 사업체당 영업이익 | 20 | 33 | 26 | 23 | 22 | -1.7 |
| 사업체당 종사자 수 | 3.2 | 3.8 | 3.9 | 3.7 | 3.7 | -3.2 |
| 종사자 1인당 인건비 | 11.0 | 11.0 | 9.7 | 8.9 | 8.0 | 8.2 |

자료: 통계청,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 가맹점과 비가맹점 비교(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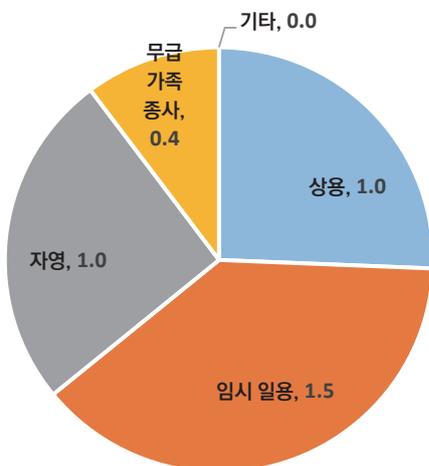
(단위: 개, 명, 십억 원, 백만 원)

| | 사업체 수 | 종사자 수 | 매출액 | 영업비용 | 영업이익 | 사업체당 | | | |
|------|---------|-----------|--------|--------|-------|-------|-------|-------|------|
| | | | | | | 종사자 수 | 매출액 | 영업비용 | 영업이익 |
| 가맹점 | 139,816 | 451,295 | 32,654 | 29,819 | 2,835 | 3.23 | 233.6 | 213.3 | 20.3 |
| 비가맹점 | 618,863 | 1,351,530 | 95,058 | 90,200 | 4,852 | 2.18 | 153.6 | 145.8 | 7.8 |

자료: 통계청,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그림 1] 가맹점 근로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명)



자료: 2019년 프랜차이즈 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계산.

<표 2>에서는 2020년 기준 외식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비교하였다. 2020년 기준 외식업 중 가맹점 사업체는 139,816개이고 비가맹점 사업체 수는 618,863개로 비가맹점 사업체 수가 많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모두 총액 기준 비가맹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사업체 1개소당 주요 지표를 비교해 보면 종사자 수는 3.23명과 2.18명으로 가맹점이 더 많았고,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은 가맹점이 각각 233.6백만 원, 213.3백만 원, 20.3백만 원이고 비가맹점은 153.6백만 원, 145.8백만 원, 7.8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즉 가맹점은 비가맹점과 비교할 때 더 많이 고용하고 더 많은 매출실적을 올리는 반면, 더 많은 영업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맹점은 영업이익이 높은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중 역시 8.7%로 비가맹점의 5.1%보다 높았다.

III. 가맹사업 공정경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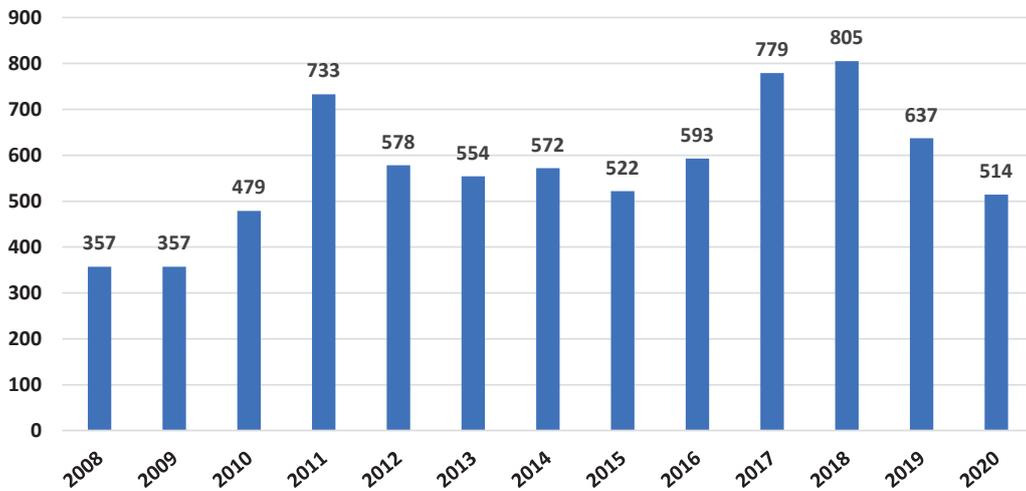
1.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유형

2008~2020년 기간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7,480건이며, 2008~2019년 기간 중 분쟁조정이 된 건수는 6,865건이다.⁴⁾

4) 가맹사업 분쟁조정 접수 현황 등의 내용은 외식업을 포함한 전체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건수이다.

[그림 2] 연도별 가맹사업 분쟁조정 접수 현황

(단위: 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유형은 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불공정 거래 행위,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 종료, 부당한 계약 해지,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다. 2008~2019년 기간 중 분쟁조정이 된 6,865건을 기준으로 분쟁조정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와 관련된 분쟁이 각각 1,213건(17.7%)과 1,362건(19.8%)으로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지도, 가맹계약의 해제·갱신, 기타 해당 가맹사업에 관하여 책자로 편철한 문서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계약 상담 단계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고,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분쟁 유형 중 거래 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분류된다. 거래 거절 행위는 합당한 사유 없이 영업지원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거절,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약정 조건을 갑자기 불리하게 수정한 뒤에 동의를 안 하면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유형 중 거래 거절 행위는 203건(3.4%)이다. 구속조건부 거래는 가맹본부가 과한 간섭 및 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의 가격결정을 심하게 제한을 한다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강제하거나 지정된 제품만 사용 및 유통하는 것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 중 구속조건부 거래는 354건(5.2%)이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우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약정을 변경하거나 영업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이 해당된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은 300건(4.4%)이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은 소비자가 얻은 피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전가를 하는 것부터 애초에 과중한 위약을 설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은 335건(4.9%)이다. 영업지역 침해는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설정된 영업지역 안에 다른 신규 가맹점 혹은 직영점의 설치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로, 분쟁조정 신청 유형 중 영업지역 침해는 332건(4.8%)이다. 이상의 사례 외에 기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조건, 광고 및 판촉행사 관련 비용 비공개 등이 있었다.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는 가맹본부가 간판과 인테리어 정책이 바뀌었다며 리뉴얼 비용을 모두 가맹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이고, 부당한 영업시간 조건은 가맹본부가 특정 영업시간을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례로 24시간 영업으로 인한 적자가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광고 및 판촉행사 관련 비용 비공개는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비를 꾸준히 받아 가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나, 다른 가맹사업주들의 납부 내역을 감추는 경우에 해당된다.

〈표 3〉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유형

| | | 신청 건수 | 비중 |
|-------------------|----------------|-------|-------|
| 가맹금 예치 의무 | | 73 | 1.1 |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 | 1,213 | 17.7 |
|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 | 1,362 | 19.8 |
| 불공정거래 행위 | 거래 거절 | 230 | 3.4 |
| | 구속조건부 거래 | 354 | 5.2 |
| | 거래상 지위 남용 | 300 | 4.4 |
| |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 335 | 4.9 |
| 영업지역 침해 | | 332 | 4.8 |
| 부당한 계약 종료 | | 211 | 3.1 |
| 부당한 계약 해지 | | 365 | 5.3 |
| 상표 및 의장권 침해 | | 3 | 0.0 |
| 기타 | | 2,087 | 30.4 |
| 전 체 | | 6,865 | 100.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2. 가맹사업 공정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여기에서는 전승훈 외(2022)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사업 공정성에 대한 가맹사업주의 주관적인 인식 정도에 대해 살펴본다. 실태조사는 1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와 「가맹분야 실태조사」의 외식업 세부 업종별, 지역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500개 가맹사업주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⁵⁾

실태조사에서는 가맹사업에서의 공정성 개념을 가맹점 사업계약과 운영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행위와 연계하여 공정성을 절차 공정성, 정보 공정성, 분배 공정성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먼저 계약 전 계약 진행상의 공정성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이 대체로 계약진행상 공정하다고 응답하

였다. 5점 만점의 공정성 평균 점수를 보면 3.77~3.89점으로 절차 공정성 중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라는 문항이 평균 3.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호작용(정보제공) 중 '⑥ 가맹본부는 나에게 계약의 체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적이 없다'는 문항이 평균 3.77점으로 가장 낮았다.

계약 후 지속적 거래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9가지 문항 중 분배 공정성(9)의 '매우그렇다'와 '그렇다'의 비중이 58.2%로 절차 공정성(1~5) 및 정보 공정성(6~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가맹본부의 비용정책에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공정성 중 '② 가맹본부는 거래기간 중에 영업지원 또는 계약갱신을 중단 또는 거절한 적이 없다'가 평균 3.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⑨ 가맹본부의 노력과 관심들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비용은 합당하다'(분배 공정성)는 평균

〈표 4〉 가맹사업 공정성 유형

| | | 내용 상세 |
|-------|--------|---------------------------------------------------------------------------------------------------|
| 계약 단계 | 절차 공정성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상권 분석 정보 제공 등 가맹 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을 준용하여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 여부 |
| | 정보 공정성 | • 가맹사업법을 준용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과장 및 중요정보 누락, 정보 은폐 없이 출점지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
| 운영 단계 | 절차 공정성 | • 필요교육 수행, 적절한 품목 구매 환경 조성 등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용하여 가맹사업주가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영업행위 절차를 이루었는지 여부 |
| | 정보 공정성 |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영업 방침에 대하여 가맹사업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였는지 여부 |
| | 분배 공정성 |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시간·비용이 가맹점 매출증가를 위해 합당하며,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였는지 여부 |

자료: 전승훈 외(2022).

5) 구체적으로 가맹점을 한식, 외국식, 제과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김밥·간이음식점, 생맥주·기타 주점, 커피·비알콜음료 등으로 구분하였고, 지역을 서울, 광역시, 기타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5〉 계약 전 계약진행상의 공정성

(단위: %, 점)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정말 그렇다 | 평균 |
|------------------------|---|-----------|--------|------|---------|--------|------|
| 절차 공정성 | 1 | - | 0.8 | 17.1 | 74.9 | 7.2 | 3.89 |
| | 2 | - | 1.4 | 19.1 | 73.3 | 6.2 | 3.84 |
| | 3 | - | 1.4 | 18.5 | 75.3 | 4.8 | 3.84 |
| 상호작용 (정보 제공) 공정성 | 4 | 0.2 | 1.4 | 21.1 | 71.7 | 5.6 | 3.81 |
| | 5 | - | 1.6 | 19.8 | 74.7 | 3.8 | 3.81 |
| | 6 | - | 1.8 | 23.8 | 70.2 | 4.2 | 3.77 |

- 주: 1)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 2)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 3) 가맹본부는 출점지에 대해 상권 및 입지 분석 정보를 제공하였다.
- 4)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
- 5) 가맹본부는 사업상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적이 없다.
- 6) 가맹본부는 나에게 계약의 체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적이 없다.

자료: 전승훈 외(2022).

〈표 6〉 계약 후 지속적 거래과정의 공정성

(단위: %, 점)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정말 그렇다 | 평균 |
|--------|---|-----------|--------|------|---------|--------|------|
| 절차 공정성 | 1 | 0.2 | 1.6 | 24.1 | 66.7 | 7.4 | 3.80 |
| | 2 | - | 2.2 | 18.1 | 71.7 | 8.0 | 3.86 |
| | 3 | - | 3.0 | 27.0 | 66.2 | 3.8 | 3.71 |
| | 4 | - | 3.6 | 22.1 | 68.5 | 5.8 | 3.76 |
| | 5 | - | 1.6 | 21.3 | 73.7 | 3.4 | 3.79 |
| 정보 공정성 | 6 | - | 1.2 | 21.5 | 70.5 | 6.8 | 3.83 |
| | 7 | - | 3.2 | 27.5 | 66.1 | 3.2 | 3.69 |
| | 8 | 0.2 | 1.4 | 31.3 | 62.7 | 4.4 | 3.70 |
| 분배 공정성 | 9 | - | 4.4 | 37.3 | 56.0 | 2.2 | 3.56 |

- 주: 1) 가맹본부는 나와 직원에 대해 가맹점 운영을 위한 교육을 충실히 하였다.
- 2) 가맹본부는 거래기간 중에 영업지원 또는 계약갱신을 중단 또는 거절한 적이 없다.
- 3) 가맹본부는 특정상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적이 없다.
- 4) 가맹본부는 상품, 원재료 등을 특정인과 거래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
- 5)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과 상관없거나 필요 이상으로 시설, 설비, 용역 등의 구입을 강요한 적이 없다.
- 6) 가맹본부는 거래절차를 합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 7) 가맹본부는 시기적절하게 대화를 하였다.
- 8) 가맹본부는 우리의 구체적 요구(요구)에 맞추어 의사소통을 하였다.
- 9) 가맹본부의 노력과 관심들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비용은 합당하다.

자료: 전승훈 외(2022).

3.56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 혹은 비용감소는 고용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IV. 가맹사업 공정경제의 고용효과

1. 분석방법

가맹사업 공정경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신뢰관계는 효율성 증진을 통한 매출증가 혹은 불필요한 비용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매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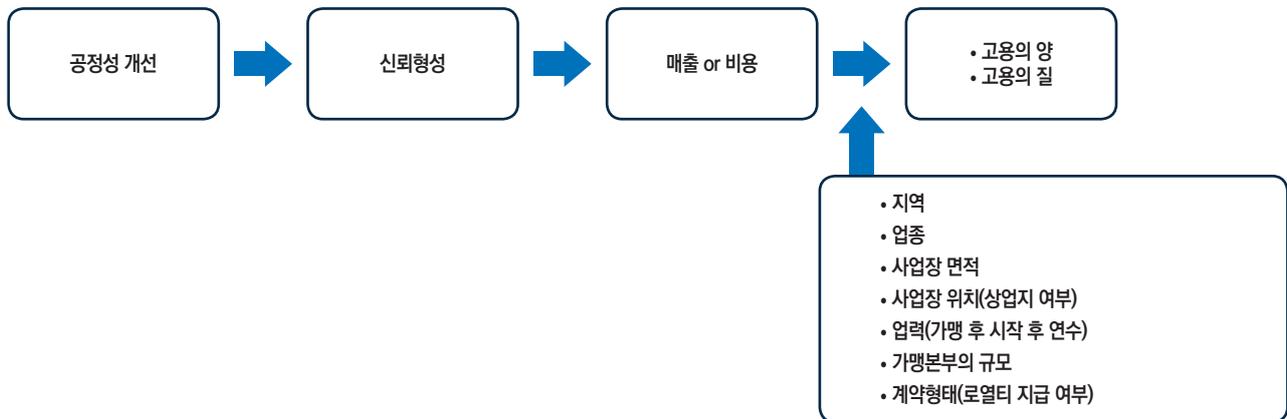
기준선: 2019년 「프랜차이즈실태조사」의 고용인원

시나리오 1: 계약단계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개선

시나리오 2: 운영단계 가맹본부에 의한 일방적인 영업비용 증가 개선

시나리오 3: 정부의 공정성 개선을 위한 정책효과

[그림 3] 가맹사업 공정경제의 고용연계성



본 연구에서 기준선을 2019년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한 것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제거한 상태에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시나리오 1은 가맹본부가 계약단계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개선될 경우 이루어지는 공정성의 개선이 매출증가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시나리오 2는 고정 로열티 제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의 성과가 가맹본부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물류 마진 및 설비/인테리어 마진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유인과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가맹사업주의 비용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고용의 양과 질이 변화하는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은 정부 정책이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부는 가맹사업을 진흥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사업법」과 「가맹진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제정하였으며, 총 3단계(계약 체결, 운영, 해지)로 구분하여 조항을 구하고 있다. 「가맹진흥법」은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가맹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가맹사업의 물류화 효율화 및 정보 촉진 운영 등 가맹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가맹진흥법」에 근거하여 2009년 이후 3차에 걸쳐 「가맹사업 진흥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차 계획(2009년)에서는 프랜차이즈 발전기반 조성 관련 정책 수립을 진행하였고, 2차 계획(2015년)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상생에 초점을 맞추고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

고 3차 계획(2021년)은 가맹사업 공정경제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10대 주요 과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3차 「가맹사업 진흥계획」의 내용이 실행됨에 따라 가맹사업 공정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정부정책에 의한 공정성의 개선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시나리오별로 공정성 개선이 매출 혹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때 공정성 개선이 매출 혹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실태조사를 통해 구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매출증가 혹은 비용감소가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때 종속변수는 고용의 양과 관련하여서는 종사자 수를 사용하였고,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형태별 종사자 비중, 시간당 임금, 주당근로시간, 사회보험가입자 비중 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지역더미 변수, 외식업 세부 업종 더미변수, 매장면적, 업력, 입지더미 변수(상업지=1), 로열티지급여부,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대수(매출액), 대수(인건비 외 비용) 등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 실태조사를 통해 구한 한계효과를 곱하여 시나리오별로 공정성 개선으로 인한 매출 혹은 비용의 변화가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분석결과: 공정성이 매출 혹은 비용에 미치는 효과

우선 실태조사 결과⁶⁾에 따르면 계약단계에서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사

업체의 7.2%이고 이들 사업체의 매출감소율은 평균 11.4%, 중앙값과 최빈값은 5%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감소율의 분포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값이 매출감소율의 대푯값으로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였다. 계약 이후 운영과정에서 가맹본부로 인한 일방적인 비용증가를 경험한 가맹사업주는 전체 표본의 7.8%이고, 비용증가 수준은 전체 비용 대비 4.5%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운영과정에서 가맹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은 인건비 이외의 비용이다. 인건비 이외의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7%이다. 따라서 인건비가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총비용이 4.5% 변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은 7.5%가 증가한다고 본 연구에서는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정성 개선정책으로 인한 신뢰관계에 의한 공정성 개선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전체 표본의 65.7%가 '대체로 개선될 것이다'와 '매우 개선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에 따른 공정성 및 신뢰관계 형성이 매출을 약 10.3%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3. 분석결과: 매출 혹은 비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단계의 분석결과⁷⁾에 따르면 로그(매출)이 종사자 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2.231로 추정되었고 로그(인건비 외 비용)이 종사자 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0.706으로 추정되었다. 즉 매출이 100% 증가할 때 종사자 수는 사업체당 평균 2.231명 증가하고, 인건비 외 비용이 100% 증가할 때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평균 0.706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매출과 비용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형태별 종사자 비중에 미치는 영향,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영향, 주당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험가입자 비중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매출의 100% 증가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을 14.6% 증가시키고 무급 및 기타근로자 비중을 2.9%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매출의 100% 증가는 자영업자의 시간당 임금을 44.2% 증가시키고,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각각 68.9%와 161.1% 증가시키며, 사회보험자 가입의 비중을

<표 7> 공정성이 매출 혹은 비용에 미치는 영향

| | 사업체 비중 | 매출 및 비용의 변화 |
|----------------------------|------------|--------------------------------|
| 계약단계 허위·부실 정보 제공으로 인한 매출감소 | 7.2% 경험 | 매출 5.0% 감소 |
| 운영단계 일방적인 비용 증가 | 7.8% 경험 | 비용 4.5% 증가 인건비 외 비용 7.5% 증가 |
| 정부의 공정성 개선정책으로 인한 신뢰관계 개선 | 65.7% 개선의견 | 매출 10.3% 증가 |

<표 8> 매출 혹은 비용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한계효과

| | | 로그(매출) | 로그(인건비 외 비용) |
|-------|--------------|------------|--------------|
| 고용의 양 | 종사자 수 | 2.231 | -0.706 |
| 고용의 질 | 근로형태별 종사자 비중 | 상용근로자 | -0.122 |
| |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0.112 |
| | | 무급 및 기타근로자 | -0.041 |
| | 시간당 임금 | 상용근로자 | -0.269 |
| |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 |
| | | 자영업자 | -0.169 |
| | 주당 근로시간 | 상용근로자 | -1.547 |
| |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 |
| | | 자영업자 | -0.388 |
| | 사회보험가입자 비중 | | -0.060 |

주 :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함.

6) 자세한 실태조사 내용은 전승훈 외(2022)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7) 분량관계상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 추정결과는 전승훈 외(2022)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6.0%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은 매출증가 시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고용을 증가시키되,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기존 인원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매출증가는 자영업자인 가맹사업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인건비 외 비용의 100% 증가는 상용근로자와 무급 및 기타 종사자의 비중을 12.2%와 4.1% 감소시키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을 11.2%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26.9%, 자영업자의 임금을 16.9% 각각 감소시키고, 상용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154.7%, 자영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8.8%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분석결과: 공정성 개선과 고용의 양과 질

공정성이 매출 혹은 비용에 미치는 효과와 매출 혹은 비용이 고용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고려하여 공정성 개선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정성 개선의 고용의 양적 변화에 미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의 정보 부실

제공 개선에 따라 종사자 수는 약 0.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정보부실제공으로 인해 매출감소를 경험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보면 고용이 약 1.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일방적인 비용증가 개선을 통해 종사자 수가 약 0.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방적인 비용증가를 경험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종사자 수는 약 2.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 3의 경우 정부정책의 효과로 종사자 수는 약 6.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은 가맹사업 공정성의 개선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맹사업공정성의 개선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미미하였다. 공정성의 개선을 통해 매출이 증가할 경우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안정성이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성 개선을 통해 일방적인 비용 증가가 개선될 경우 상용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상용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가입자의 비중은 근로자의 구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표 9〉 공정성 개선과 고용의 양 : 종합

(단위 : %, 점)

| | 기준선 | 추정결과 | 증가율 |
|-------------------------|-------|-------|--------------|
| 시나리오 1 : 정보 부실제공 개선 | 482.9 | 483.8 | 0.2 (1.4) |
| 시나리오 2 : 일방적 영업비용 증가 개선 | | 483.4 | 0.1 (2.9) |
| 시나리오 3 : 정부정책의 효과 | | 511.9 | 6.0 |

주: ()는 해당 사례로 피해를 본 가맹점 종사자 수 대비 증가율임.

〈표 10〉 공정성 개선과 고용의 질 : 종합

| | | 시나리오 1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3 |
|------------|---------|------------|------------|------------|
| 근로 형태별 비중 | 상용근로자 | 0.03%p 감소* | 0.91%p 증가 | 0.06%p 감소* |
| | 임시 및 일용 | 0.73%p 증가 | 0.84%p 감소 | 1.51%p 증가 |
| | 무급 및 기타 | 0.15%p 감소 | 0.31%p 증가 | 0.30%p 감소 |
| 시간당 임금 | 상용근로자 | 0.06% 인하* | 2.01% 인상 | 0.11% 인하* |
| | 임시 및 일용 | 0.39% 인상 | 0.64% 인상 | 0.81% 인상 |
| | 자영업자 | 2.21% 인상 | 1.26% 인상 | 4.57% 인상 |
| 주당 근로시간 | 상용근로자 | 3.45% 증가 | 11.57% 인상 | 7.13% 증가 |
| | 임시 및 일용 | 8.06% 증가 | 4.09% 감소* | 16.66% 증가 |
| | 자영업자 | 0.56% 증가* | 2.90% 인상 | 1.16% 증가* |
| 사회보험가입자 비중 | | 0.30%p 감소 | 0.58%p 증가* | 0.62%p 감소 |

주: *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는 의미임.

것으로 보인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비율이 낮아, 임시 및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될 경우 사회보험가입률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V. 정책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 간 공정성 개선은 상호 신뢰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고용의 양에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가맹 전과 가맹 이후 단계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 간의 주요 분쟁 및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가맹계약 전 단계에서는 정보비대칭성 개선이 필요하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희망자 간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가맹사업 수행 시 기대 불일치 정도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수익 및 현황 그리고 사업 수행 비용 및 제약조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 의사결정 시 주요 고려지표인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출액, 주요 판매 품목, 개점 및 폐업 점포 수, 평균 점포 업력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가맹점 매출액 정보는 정보공개서에 연간 광역시도별로 제공되고 있으나, 가맹사업의 계절적 지역적 특성 확인과 동시에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공 정보 강화가 필요하다. 가맹본부는 월간 지역별(최소 자치구 단위) 수준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되, 직영점과 가맹점을 구분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가맹사업의 경쟁력 및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폐업 현황 정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월별(최소 분기별) 사업체 현황을 직영점과 가맹점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 갈등 중 하나는 원부자재 유통마진으로, 정보공개서에 의무납품 품목 현황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POS(Point of sales) 단말기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력 메뉴 판매내역을 객관적으로 제공하면 가맹희망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종별 필수품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맹본부별로 해당 안의 준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창업 시 업종 전문성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맹사업에서 정보비대칭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관련 교육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가맹 계약 이후에는 원활한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및 필수 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상호 이해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공정경제 확산을 위해 심도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영업권 관리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업지역 보호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권 침해 받은 가맹사업주 중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가 중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배달플랫폼 이용 증가 등 영업권 관련 분쟁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 간 공정성 개선을 위해 필수 납품 항목 명시화, 가맹사업주와의 소통창구 확대, 품목 가이드라인 마련, 가맹사업주 집단 선택 권한 제공 등을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수품목 비용 대신 로열티로 대체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승훈 외(2022)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용 중 로열티를 지불하는 사업자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평균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로열티 중 정률형 방식은 가맹사업주 수익이 가맹본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할 유인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수현(2019),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법학논집』 23(4), pp. 121~150.
- 공정거래위원회(2021), 「2020년도 가맹사업 현황」, 2021. 3. 4.
-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주)하이데이터(202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평가체계 구축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
- 서봉석(2019), 「프랜차이즈계약과 적극적 청구권침해」, 『은행법연구』 12(2), pp. 37~60.
- 양동희·박승남(20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21』 12(1), pp.1713~1722.
- 전승훈 외(2022),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의 고용효과: 외식업을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보고서,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각 연도.
- 허재준·최규완·방도형(2018), 『음식서비스분야 건전한프랜차이즈 고용모델 발굴』, 고용영향평가보고서,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KLI EMPLOYMENT
I M P A C T
A S S E S S M E N T
B R I E F